

## [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**교보약사 코어 증권 자투자신탁 1호(주식)**

나. 변경 시행일 : 2014년 7월 14일 (월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### [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작성기준일	작성기준일 변경	<a href="#">2013년 12월 17일</a>	<a href="#">2014년 7월 4일</a>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a href="#">2014년 3월 20일</a>	<a href="#">2014년 7월 14일</a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('14.06.01)사항 반영	<p>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a href="#">&lt;단서조항 신설&gt;</a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a href="#">없습니다.</a></p> <p><a href="#">4.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a></p>	<p>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a href="#">단,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a>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a href="#">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a></p> <p><a href="#">4. 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(일괄)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a></p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(FATCA)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	<a href="#">&lt;신설&gt;</a>	<a href="#">9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</a>

			<a href="#">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a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 신설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1)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(FATCA)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, 투자위험(기타위험)에 관한 사항 신설</a> <a href="#">2)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('14.06.01시행)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</a> <a href="#">3)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 - '교보약사 코어 사모증권 자투자신탁 1호(주식)'</a> <a href="#">4) 부책임용전문인력 신설</a> <a href="#">5)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(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,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규모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의 모투자신탁 및 다른 자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사항)</a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'	부책임용전문인력 신설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이혜진</a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'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<a href="#">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</a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; 다. 모자형 구조	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	<a href="#">교보약사 코어 사모증권 자투자신탁 1호(주식)</a>	<a href="#">&lt;삭 제&gt;</a>
제2부. 집합투자기	미국 해외계좌의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</a>

구에 관한 사항 中 '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', 다. 기타위험	무납세법(FATCA) 과 관련 변경		<a href="#">(FATCA)과 관련 기타위험 신설</a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'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'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<a href="#">'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' 및 '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'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</a>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中 '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'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</a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작성기준일	작성기준일 변경	<a href="#">2013년 12월 17일</a>	<a href="#">2014년 7월 4일</a>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a href="#">2014년 3월 20일</a>	<a href="#">2014년 7월 14일</a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('14.06.01)사항 반영	<p>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a href="#">&lt;단서조항 신설&gt;</a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a href="#">없습니다.</a></p> <p><a href="#">4.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a></p>	<p>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a href="#">단,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a>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<a href="#">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a></p> <p><a href="#">4. 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(일괄)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</a></p>

			<a href="#">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a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(FATCA)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	<a href="#">&lt;신설&gt;</a>	<a href="#">9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a>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'5. 운용전문인력'	부책임용전문인력 신설	<a href="#">&lt;신설&gt;</a>	<a href="#">이혜진</a>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'5. 운용전문인력'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	<a href="#">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</a>